비밀유지계약서

회사명 YeongWon(영원)의 기술자료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회사명 YeongWon(영원)의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1.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회사명 YeongWon(영원)의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Software,

Hardware 관한 정보·자료 및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공동대표 서로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그외 프로세스, 매뉴얼, 장비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기타 등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회사명 YeongWon(영원)의 기술자료를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비밀로 관리 되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 목적외 사용금지)

회사명 YeongWon(영원)의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서명자(계약자)는 각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1. 서명자(계약자)는 비밀유지계약서(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 및 서명 후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서명자(계약자)는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지침 마련, 정보보안 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비밀유지 기간)

계약기간은 서명 후 즉시 유효기간이 시작되며, 계약 종료 시 유효기간은 해제 된다.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기간은 회사명 영원의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계약 종료 후 3년으로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서명자(계약자)는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자(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보 반환 및 파기)

비밀유지계약 종료 시 제공된 기술자료와 관련된 모든정보(서류, 전자파일 등)를 반환 하거나 파기 하도록 한다. 필요시 당사자(공동대표)는 자료의 파기 절차와 방식, 증명서 제출 의무 등을 명시하여 안전한 정보관리를 요구 및 보장할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 1. 서명자(계약자)는 비밀유지계약서(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 및 서명 후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2.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회사명 영원의 공동대표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공동대표)와 서명자(계약자)는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동대표(갑) 공동대표(을)

회사명: YeongWon(영원) 회사명: YeongWon(영원)

이 름:

서 명: (인) 서 명: (인)

서명자(계약자)

이 름:

서 명: (인)